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366
----------	-------

발의연월일 : 2025. 8. 26.

발 의 자 : 장경태·노종면·박선원
김동아·전현희·안태준
이성윤·김영배·정준호
윤종균·김현정·김승원
백혜련·김기표·채현일
이재관·이정현·이연희
전용기·김준혁·김병주
모경종·박희승·김용민
추미애·박지원·서영교
의원(27인)

제안이유

현행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는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나, ‘관련 사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바, 관련 사건 범위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줄이기 위해 ‘정의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제도를 규정하면서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가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군검사나 검사가 이첩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특별검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공소가 진행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해 군사법원에서 별도로 재판이 진행되면서 특검 수사의 목적과 충돌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군검사·검사가 담당하는 공소도 이첩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검사의 지휘·감독 아래 공소유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수사와 공판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파견검사도 특별검사의 지휘에 따라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재정없이 공소유지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원활한 공소유지 및 공소업무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아울러, 내란 및 외환사건과 같이 광범위하고 중대한 사안의 진상규명에는 기간이 부족하며 이를 수사하고 공소를 유지하기 위한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사연장기간과 그 횟수를 늘리고, 파견검사 및 파견공무원 수를 증원하여 공판 업무를 충실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적 중대 사건의 진상규명과 공소유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은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도록 되어 있는바, 「검찰청법」에 의한 검사의 수사 범위 제한으로 인해 검찰의 수사대상이 아닌 범죄가 있을 수 있어 이 경우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하도록 하며, 특별검사의 지휘

아래 수사를 완료하도록 함.

내란 및 외환 관련 범죄의 경우 이와 관련된 자의 진술, 증언 및 자료제출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바, 이 법의 수사대상과 관련하여 자수를 하거나,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사건의 파악에 중요한 진술 또는 증언을 할 경우 그 형을 감면해주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이 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관련사건’ 범위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줄이기 위해 ‘정의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3항).
- 나. 파견검사의 상한을 60명에서 70명으로, 파견공무원의 상한을 100명에서 140명으로 확대하여 특별검사의 수사와 공판 업무를 충실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5항)
- 다. 군검사·검사가 담당하는 공소도 이첩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검사의 지휘·감독 아래 공소유지가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7조제3항).
- 라. 파견검사도 특별검사의 지휘에 따라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재정없이 공소유지가 가능하게 함(안 제8조제7항).
- 마. 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

을 30일이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총 2회에 걸쳐 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사건을 다른 법률에 불구하고 국가수사본부에게 인계를 하고, 국가수사본부가 특별검사의 지휘 아래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도록 함(안 제10조제6항, 제7항).

사.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을 위반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 수사·재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정하는 주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 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25조).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 법에서 “관련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명이 범한 여러 건의 죄
2.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한 죄
3.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범한 죄
4.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5.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영장에 의하여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
6. 이 사건 범죄수익의 원인 또는 그 처분으로 인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
7. 「형법」 제19조에 따른 독립행위로서 경합하는 범죄
8.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범죄

제6조제5항 단서 중 “파견검사의 수는 6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의 수는 100명 이내”를 “파견검사의 수는 7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140명 이내”로 한다.

제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본문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③ 검사 또는 군검사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유지하는 경우, 특별검사가 이첩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해당 검사 또는 군검사는 특별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공소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특별검사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파견검사로 하여금 특별검사의 지휘·감독 하에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재정없이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제3항 중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을 “2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각 30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를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에 따라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을 “국가수사본부장은 특별검사의 지휘 하에”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형벌 등의 감면)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을 위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2.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
3. 수사·재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정하는 주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 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내란 등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특별검사의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관한 특별검사의 권한 등,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수사기간 등, 파견검사 및 파견공무원의 수 등에 대하여도 이 법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① · ② (생 략) <u><신 설></u>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이 법에서 “관련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것을 말한다.</u> <u>1. 1명이 범한 여러 건의 죄</u> <u>2.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한 죄</u> <u>3.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장 소에서 범한 죄</u> <u>4.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 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u> <u>5.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영장에 의하여 확보 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u> <u>6. 이 사건 범죄수익의 원인 또 는 그 처분으로 인한 「형 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 지, 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u> <u>7. 「형법」 제19조에 따른 독</u>

③ 제2항에 따라 특별검사의 지휘를 받는 검사 또는 군검사는 특별검사에 파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6조제5항에 따른 파견검사의 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u>사는 특별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공소를 수행하여야 한다.</u> ④ 제2항 및 제3항----- ----- ----- ----- -----.
제8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① ~ ⑥ (생략) <u><신설></u>	제8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특별검사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파견검사로 하여금 특별검사의 지휘·감독 하에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재정없이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수사기간 등) ① . ② (생략) ③ 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u>1회에 한</u> 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제10조(수사기간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2회에 한 정하여 수사기간을 각 30일--- ----- ----- -----

한다.

④ · ⑤ (생략)

⑥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대한 보고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하되, 그 보고기간의 기산일은 사건인계일로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사건을 인계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이 경우 사건의 처리 보고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신설>

-----.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에 따라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하여야 한
다. -----

-----.

⑦ -----
-----국가수사본부장은 특별검
사의 지휘 하에-----

-----.
-----.

제25조(형벌 등의 감면) 제2조제1
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을
위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2.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

3. 수사·재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정하는 주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 행위 또는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